



2008.08.29.

독일 식품 수입관리제도

목차

1. 독일 식품 수입관리제도

내용문의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
(02-2194-7453, hahj100@khidi.or.kr)

□ 독일의 식품 수입관리제도

- EU 편입과 함께 EU 공통규정을 준수함
 - 수입식품 제품에 대한 등록의무는 없으며 수입업자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
 - 수입업자는 하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함
 - ① 수출업자등록증
 - ② 수입업자의 제품 테스트 결과 증명서
 - ③ 독일 시험소의 테스트 결과 증명서
 - ④ 독일 식품검역소 테스트 결과 증명서

: 독일 식품검사 당국은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제품을 국내산 제품 제조와 유통과 동일하게 관리함

 - ⑤ 식품관리 법규는 Order No 43/2002 (V.14.) FVM-EuM-GM 임
- 수입 전반에 관한 절차는 수입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며, 수입업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
- 수출업자는 구비서류, 식품검사결과 및 식품첨가물 정보, 포장방법 등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함
- 수출입절차관련 주요 정보는 홈페이지 상에서도 확인 가능함
 - 홈페이지 주소 :
http://ec.europa.eu/food/international/trade/interpretation_imports.pdf
- 검역절차 일반
 -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품 검역
 - ▶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품을 수입 시에는 관계식품 법령 또는 EU에서 정하는 조건의 준수의무는 수입업자가 져야 함.
 - ▶ 즉, 수입시점부터 식품의 유통에서부터 수입업자의 책임이 있음.
 - ▶ 식품 위생은 별도로 하고 수입관리 제도는 첨가물, 식품과 접촉된 물질,

식품원료 오염 등 안전문제 전반을 다룸.

- 동물성 원료 식품 검역

- ▶ 동물성 원료인 식품을 수입 시에는 Directive 97/78/EC 법령을 준수해야 함.
- ▶ 동물성 원료인 식품은 세관 검역당국에 제출되어 수입관리를 받아야 하며, 세관 도착 전 관할 검역당국에 사전 통지되어야 함.
- ▶ 세관의 검역당국은 식품이 수입, 승인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출된 상품인지 여부를 판별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결정함.
- ▶ 수입절차는 EU 규정(Commission Regulation (EC) No 136/2004)에 따름.
- ▶ 동 규정은 Article 14 of Regulation (EC) No 882/2004 규정에 의거 동물성 원료 식품의 식품위생 및 동물의 건강상태와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, 식품과 접촉된 물질, 식품방사성 처리여부를 관리함. (인스턴트 라면인 경우 감마,뮌트겐,중성자,자외선,전자,이온선 방사처리)

- 독일 식품 수입, 검역 통제 관련 기관

(Kontrollstellen der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ährung
für die Durchführung von Konformitätskontrollen nach VO (EG) Nr.
1148/2001

Zentrale der BLE (Referat 413)

(0228) 6845-0 (0228) 6845-3336 (0228) 6845-3945

Zentrale Leitstelle Q (069) 693733 (069) 694277

Kontrollbereich Nord - Außenstelle Hamburg

(Hamburg, Bremen, Niedersachsen, Schleswig-Holstein, Mecklenburg-
Vorpommern)

Einsatzleitung Hamburg (040) 306860-20 (040) 30686060

Hamburg-Großmarkt Q (040) 330929 (040) 336585

Hamburg-Hafen Q (040) 7892580 (040) 7891131

Bremerhaven Q (0471) 412051 (0471) 4192321

Pomellen Q (040) 330929 (040) 336585

Kontrollbereich Mitte/B - Außenstelle Weimar

(Berlin, Brandenburg, Sachsen - ohne Büro Schönberg, Sachsen-Anhalt, Thüringen)

Einsatzleitung Berlin Q (030) 3989920 (030) 3953418

Berlin-Großmarkt Q (030) 3958079(0172) 6925320 3)(030) 3953418

Forst (Olszyna) (03562) 699240(0173) 6901887(030) 3953418

Frankfurt/Oder (Swiecko) (0335) 535135(0173) 3213289(030) 3953418

Ludwigsdorf (0172) 6925361 (030) 3953418

Kontrollbereich Mitte/F - Außenstelle Weimar

(Hessen, Nordrhein-Westfalen)

Einsatzleitung Frankfurt/Main (069) 65006954 (069) 694277

Frankfurt/M-Flughafen Q (069) 693733 (069) 694277

Frankfurt/M-Frischezentrum (069) 94419652 (069) 432287

Köln-Großmarkt Q (0221) 3404629 (0221) 344331

Kontrollbereich Süd - Außenstelle München

(Bayern, Baden-Württemberg, Rheinland-Pfalz, Saarland, Büro Schönberg)

Einsatzleitung München Q (089) 746347-51 (089) 746347-15

Schönberg (037438) 20697(0177) 5983021(089) 746347-15

- 수입관세(Import duties)

- 모든 EU 역내의 식품수입 관세는 동일하게 부과됨

- 역내관세에 대한 관세율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함

- EU 관세율 사이트:

http://europa.eu.int/comm/taxation_customs/dds/cgi-bin/tarchap?Lang=EN

- EU 집행위는 각국 국경의 세관에서 산동물, 동물가공식품 및 냉동식품에 대해 특정한 장소에 검역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모든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, 수입품 중 주류는 수입업자 라이선스와 재정보증이 필요함